

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9월 17일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## 1. 提案經緯

가.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 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배기한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## 2. 提案理由

1. 현행 조례상 제8조 제1항중 제6조 (간사와 서기)는 제7조 (기능)로 바로잡는 것이며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으므로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하기 위함.

## 3. 主要骨子

가. 제8조 제1항중 “제6조”를 “제7조”로 함 (안 제8조 제1항)

나. 제9조의 2를 신설

제9조의 2(승인)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되기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#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 1 항중 “제6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 9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9 조의 2 (승인)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되기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 8 조 (지명의조사) ① <u>제6조에</u>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 9 조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 8 조 (지명의 조사) ① <u>제7조에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 조의 2 (승인) <u>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되기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